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 정비〉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4625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5. 11.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 상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제도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제2항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 ----- ----- --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2.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④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기업재난관

현행	개정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험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단체의 자격,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기업재난관리사”라 한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생략)	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4.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⑥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 -----. ⑦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 ----- 수수료, 제5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및 제6항----- -----. 제10조의3(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 ----- 기업재난관리사----- ----- ----- ----- ----- -----. 제17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u>재해경감활동계획서</u>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5. (생략) ③ (생략) 제35조(청문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u> 및 대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1의2. (생략) <신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해당 <u>우수기업·인증</u>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u>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u> 4. ----- <u>재해경감활동계획을</u> -----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청문 등) ① ----- - <u>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u> ----- ----- ----- -----.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u> 2. (현행과 같음) ② ----- ----- ----- <u>우수기업, 인증대</u>

현행	개정안
<u>대행기관</u> 또는 <u>대행자에게</u> 송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 제8조의3 및 제17조에 따라 우수기업의 인증 취소,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u>대행자의</u> 등록 취소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u>우수기업·인증대행기관</u> 또는 <u>대행자에게</u>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3.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 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u>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u> -----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8조의3, 제10조의2제5항 ----- ----- 지정 취소,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의 취소, <u>대행자의</u> ----- ----- <u>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기업재난관리사</u> ----- -----. 제3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 제)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 ----- ----- 제36조(벌칙)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u>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u> <u>발려주</u>

현행	개정안
4.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인증시험의 실시 및 인증서의 발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② (생략)	<u>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u> 4.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의 교부를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분	개정 조문	내용
제도의 명칭 변경	제10조의2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기업재난관리사 결격사유 신설		피성년후견인, 벌금형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처분 신설		3년간 응시제한
기업재난관리사의 금지행위 신설		자격증을 대여·빌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취소 및 정지사유 신설		부정한 자격 취득, 결격사유, 금지행위 위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취소사유 정비	제17조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행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청문 대상 추가	제35조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취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
기업재난관리사 금지행위 위반 시 벌칙 조항 신설	제36조	기업재난관리사가 제10조의2의 금지행위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업재난관리사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연평균 약 580여명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약 198명이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하였음¹⁾.

[기업재난관리사 전문교육과정 이수 현황]

(단위 : 명)

교육이수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6,974	33	744	687	794	663	827	639	424	648	589	511	415
실무	6,062	33	744	594	737	505	659	523	360	577	498	459	373
대행	748	-	-	93	57	143	132	82	49	62	54	43	33
인증평가	164	-	-	-	-	15	36	34	15	9	37	9	9

자료 : 행정안전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취득 현황]

(단위 : 명)

합격현황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2,180	137	190	239	192	231	237	186	183	226	216	143
실무	1,881	137	187	228	155	185	181	155	155	184	192	122
대행	169	-	3	11	26	30	22	13	19	22	12	11
인증평가	130	-	-	-	11	16	34	18	9	20	12	10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 상 기업재난관리사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이라는 명칭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인증’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의미²⁾한다는 점에서 특정 업무의 수행, 영업활동, 그 밖의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기능의 보유 또는 일정한 경험이 있음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³⁾

1) 총 3개 분야(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에 대해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자격시험도 각 과정별로 실시하고,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분야의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이 부여됨.

2) 국회 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p.354

3) 국회 법제실(2024), 「법제기준과 실제」, p.569

하는 ‘자격’과 혼재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도의 명칭을 자격 제도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한편, 자격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자격의 결격사유, 금지행위, 취소 및 정지사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유사 입법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유사 입법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공인재난관리사 관련 규정]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 ④ (생략)

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일부터 3년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인재난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⑨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자격, 공인재난관리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생략)

② 제7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중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연수 실시 및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과 제78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6의2. 제7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7. (생략)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취소사유 정비하는 것(안 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재해경감활동계획서”라는 용어를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계획⁴⁾”으로 변경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인데,

현행법 제15조에서도 “재해경감활동계획서”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현행법에 일관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문도 함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⁵⁾.

둘째,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재해경감활동계획”이란 기업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략계획, 경감계획, 사업연속성확보계획, 대응계획 및 복구계획을 말한다.

5)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우수기업 및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서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대행자의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안 제36조)과 관련하여,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는 유사 사례의 벌칙 수준을 고려할 때,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수준을 상향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자격증 대여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사례]

구 분	내 용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공인재난관리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유사 입법례에서는 징역형을 함께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와 같이 징역형을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서 정하려는 기업재난관리사의 결격사유(안 제10조의2제2항)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